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11 발의연월일: 2024. 7. 1.

발 의 자: 송옥주·정성호·이병진

황명선 · 한정애 · 문진석

박 정・박홍근・부승찬

박해철 • 전용기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국보건사회연구원(2021)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률혼 및 사실혼상태 여성의 17.2%가, 35세 이상 기혼여성의 33.1%가 난임을 경험하였음. 초혼 연령의 증가 추세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의 난임 경험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

그러나 현행법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위해 매우 짧은 기간(연간 3일) 만을 난임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. 온전한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의학적 시술에 더해 2~3개월 간의 체질변화나 배란 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3일 간의 난임치료 휴가만으로는 그 목적 달성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.

이에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유급휴직을 별도로

부여하는 등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노동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고 저출생 현상 타개에 이바지하고자 함(안 제18조의4 신설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121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 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4 및 제18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8조의4(난임휴직) ① 사업주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난임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체질개선 및 배란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 등 난임치료를 위하여 휴직(이하 "난임휴직"이라 한다)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② 난임휴직의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직을 허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 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.
 - ③ 난임휴직의 기간 중 최초 30일은 유급으로 한다.
 - ④ 난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, 복직 후의 처우에 관한사항, 난임휴직 실시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또는 근로자파견기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육아휴직"은 "난임휴직"으로, "육아휴직 기간"은 "난임휴직 기간"으로 본다.

- ⑥ 그 밖에 난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8조의5(난임휴직 지원) ① 국가는 제18조의4에 따른 난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(이하 "난임휴직급여"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난임휴직급여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제18 조의4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.
 - ③ 난임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재정이나 「사회보장기본법」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.
 - ④ 근로자가 난임휴직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관계 서류의 작성·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 - ⑤ 난임휴직급여의 지급요건, 지급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제37조제2항제3호 중 "제19조제3항"을 "제19조제3항(제18조의4제4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"제4항"을 "제4항(제18조의4제4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"으로 한다.

제39조제3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3. 제18조의4제1항·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난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휴직을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신 설></u>	제18조의4(난임휴직) ① 사업주는
	의료기관으로부터 난임진단을
	받은 근로자가 체질개선 및 배
	<u> 란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 등</u>
	난임치료를 위하여 휴직(이하
	"난임휴직"이라 한다)을 신청하
	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
	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	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	② 난임휴직의 기간은 3개월
	이내로 하되 근로자가 청구한
	시기에 휴직을 허용하는 것이
	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
	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
	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
	경할 수 있다.
	③ 난임휴직의 기간 중 최초 3
	0일은 유급으로 한다.
	④ 난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
	한 처우 금지, 복직 후의 처우
	에 관한 사항, 난임휴직 실시에
	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
	근로자의 사용기간 또는 근로

<신 설>

자파견기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3항부터 제5 항까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육아휴직"은 "난임휴직"으로, "육아휴직 기간"은 "난임휴직

⑥ 그 밖에 난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8조의5(난임휴직 지원) ① 국가는 제18조의4에 따른 난임휴 직을 부여받은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(이하 "난임휴직급여"라 한다)을 지급할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난임 휴직급여는 그 금액의 한도에 서 제18조의4제3항에 따라 사 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.

③ 난임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재 정이나 「사회보장기본법」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

제37조(벌칙) ① (생 략)

-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다.
- 1. ~ 2의2. (생 략)
- 3. 제19<u>조제3항</u>을 위반하여 육 3. <u>제19조제3항(제18조의4제4항</u>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.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 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

4. ~ 9. (생략)

- ③ (생략)
-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

Ó]	디	_
\mathcal{M}	- 1	•

- ④ 근로자가 난임휴직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관계 서류의 작성 · 확인 등 모든 절 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- ⑤ 난임휴직급여의 지급요건, 지급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 한다.

제37조(벌칙) ① (현행과 같음)

②	
·.	

- 1. ~ 2의2. (현행과 같음)
- 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하다)-----
 - 4. ~ 9. (현행과 같음)
 - ③ (현행과 같음)
 - (4) ----

- 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.
- 1. ~ 3. (생략)
- 4. 제19조제1항·제4항을 위반 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,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 우

5.·6. (생 략) 제39조(과태료) ①·② (생 략)

- ③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~ 3의2. (생 략) <신 설>

1. ~ 3. (현행과 같음)
4제4항(제18조
의4제4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
<u>우를 포함한다)</u>
5. • 6. (현행과 같음)
제39조(과태료) ①·② (현행과
같음)
③
1. ~ 3의2. (현행과 같음)
3의3. 제18조의4제1항·제3항을
위반하여 근로자의 난임휴직
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휴직

	을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
	<u> </u>
4. ~ 9. (생 략)	4. ~ 9. (현행과 같음)
④·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